



서울신용보증재단

수 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 목 **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(안)**

「산업안전보건법령」을 반영하고, 원활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및 안전보건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「안전보건관리규정」을 개정하고자 합니다.

- 다 음 -

1. 개정사유

- 가. 「산업안전보건법령」 및 「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」 개정 내용 반영
- 나.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세부사항 명확화

2. 주요 개정내용 : [붙임1] 참고

3. 시행일 : 이사회 의결 즉시 시행

붙 임 1.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(안) 1부

2.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전 전문 1부

3.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후 전문 1부. 끝.

